

Q&A 제품안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1

가구의 안전·품질표시 제도란 무엇이며 표시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A

가구의 안전·품질표시제도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안전기준(유해물질 등)에 적합함을 제조 및 수입업체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제품에 관련 정보를 표시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의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에 KC마크와 품명, 외형치수, 안전요건 합부(유해물질), 제조연월, 제조자명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대표적인 표시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KC마크(오른쪽 마크)
- 품명(책상, 의자, 싱크대 등)
- 외형치수(mm): 길이 × 너비 × 높이
- 구조부재(MDF, PB, 강재 등)
- 표면가공(PVC시트, 도장, 무늬목, LPM 등)
- 안전요건 합부(유해물질): "합격"
- 제조연월
- 제조자명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제조국명
- 취급상 주의사항



Q2 가구의 주요 안전기준은 무엇이 있나요?

A

현행 가구의 안전기준은 목재재질을 사용한 완제품에 대해 폼알데하이드라는 유해물질의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10년 7월 1일부터 출고 또는 통관되는 가구는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유해물질 안전요건 〉

시행시기	시험항목	허용기준치	비고
2010년 7월 1일 ~ 계속	폼알데하이드 방출량(mg/L)	평균값이 1.5 이하	데시케이터법

Q3 1P2W 220V 60Hz 30A의 전자식 타임스위치가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A

전자식 타임스위치는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1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세부범위 전자식 스위치에 해당되어 안전인증 대상품목입니다. 참고로 전자식 스위치의 정격전류가 16A 이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정격전류가 17A 이상의 제품은 안전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Q4 스페인산(EU) 제빙기를 수입하려 하는데 본 제품은 ISO9001, CE 등 인증마크를 취득한 물품으로서 안전인증면제가 가능한지요?

A

제빙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품목에 해당되므로, CE마크 등 외국의 인증을 받은 것과는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안전인증은 제조자가 받는 것이나, 외국에 소재한 제조자의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의한 인증신청이 가능합니다.